

< 통신분쟁조정신청서 및 기재요령 >

(제1호 서식) 분쟁조정신청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40조의6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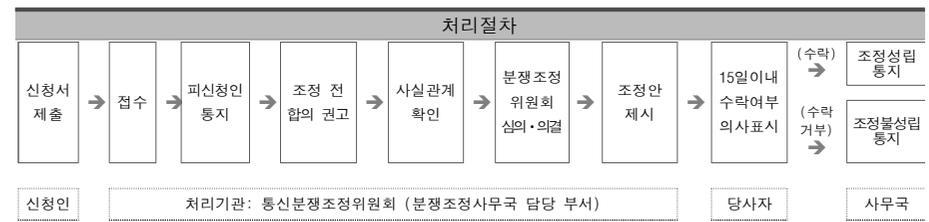
통신분쟁조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사건 번호	접수 일자	처리 기간	60일
<p>「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5에 따라 분쟁조정과 사실확인 등 법령에서 정한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분쟁조정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5년간 보존합니다.</p> <p>*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5제2항에 따라 신청내용을 피신청인에게 제공합니다.</p>			
1. 신청인			
성명 (상 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 소			
* 분쟁조정 신청접수, 조정 및 기타 처리 관련 사항을 문자,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알려드리니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대리인(* 대리인이 신청 시 기재하며, 위임장<제2호 서식>을 함께 기재하여 첨부)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신청인과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변호사 <input type="checkbox"/> 법정대리인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4촌 이내의 친족 () <input type="checkbox"/> 임직원		
주 소			
2. 피신청인			
상 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홈페이지주소 (URL)	<input type="checkbox"/> 웹사이트 없음 또는 모름		
주 소			

3. 분쟁조정 신청 내용 (*신청내용은 별지로도 작성 가능합니다.)	
분쟁유형	<p>* 해당 항목이 여러 개인 경우 모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p> <p><input type="checkbox"/> 손해배상 관련 분쟁 <input type="checkbox"/> 이용약관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 관련 분쟁</p> <p><input type="checkbox"/> 계약 체결·이용·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input type="checkbox"/> 전기통신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p> <p><input type="checkbox"/> 요금·약정조건·요금할인 등의 중요사항 미고지(설명) 또는 거짓고지(설명) 관련 분쟁</p>
신청취지 (요구사항)	*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이유 및 협의경과	<p>* 분쟁발생 일시·원인·내용, 해당 사업자와 협의했던 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p> <p>* 작성 샘플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안내 홈페이지(www.kcc.go.kr/) 분쟁조정안내를 참고</p>
증빙자료	* 증빙자료 명칭(예 : 1.계약서, 2.관련자료, 3.사진·녹음 등)을 기재하고, 내용을 별도로 첨부
<p>분쟁조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피신청인에게 분쟁신청서 등의 사본제공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p> <p>(동의하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p> <p>「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또는 대리인 : 인</p> <p style="text-align: right;">통신분쟁조정위원회 귀중</p>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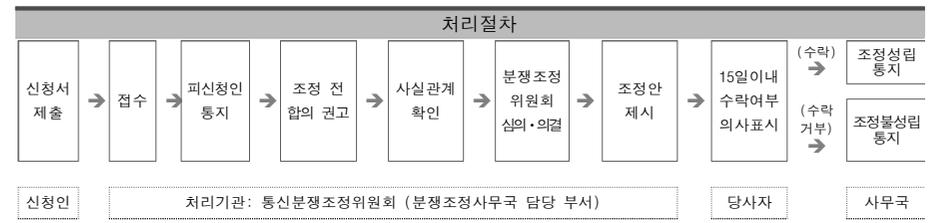


3. 분쟁조정 신청 내용 (※신청내용은 별지로도 작성 가능합니다.)

요구사항	<p>※ 요구사항을 해당항목에 중복선택하거나 아래의 빈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손해배상 관련 분쟁 <input type="checkbox"/> 이용약관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 관련 분쟁 <input type="checkbox"/> 계약 체결·이용·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input type="checkbox"/> 전기통신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 <input type="checkbox"/> 요금·약정조건·요금할인 등의 중요사항 미고지(설명) 또는 거짓고지(설명) 관련 분쟁</p> <p>(예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통화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금 100,000원을 조건없이 지급하라</p>
신청이유 및 협의경과	<p>※ 일시, 침해내용, 협의경과사항 등 분쟁조정 신청을 하게 된 원인을 상세히 기재 ※ 작성 샘플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안내 홈페이지(www.kcc.go.kr/) 통신분쟁조정안내란을 참고</p> <p><input type="checkbox"/> 신청개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0** . 4. 7 피신청인의 강남대리점(홍길동 경영)에서 개통일자를 같은 날로 하여 010 이동전화에 가입하였으며, 부가서비스로는 착신서비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동전화에 가입한 후 20** . 5. 6 오후부터 신청일 현재에 이르기까지 통화중 끊김 현상이 잦아 금 100,000원이라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 통화 중 끊김현상을 일자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요망 이동전화서비스중 통화 끊김 현상이 잦다는 사실을 피신청인의 강남대리점(또는 피신청인 본사)에 (언제 언제) 통보하고 A/S와 동시에 손해를 배상(000원)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이에 불응하여(또는 적절한 손해배상액이 아니라고 협의를 성립되지 아니하여) 위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분쟁조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p><input type="checkbox"/> 협의경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0** . 5. 7. : 이동전화서비스중 통화끊김 현상이 잦다는 사실을 피신청인의 강남대리점(또는 피신청인 본사)에 통보 20** . 5. 20. : 통화끊김에 대해 재차 통보 및 A/S조치 요청 20** . 5. 25. : 통화끊김에 대해 재차 통보 및 A/S와 동시에 손해를 배상해 줄 것을 요구 20** . 5. 30. :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000원)을 거부 20** . 6. 5. : 국민신문고에 민원 신청 20** . 6. 30. : 피신청인은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oooo 등의 사유로 손해배상 불가 통보 20** . 7. 20. : 손해배상에 대해 계속적으로 거부함에 따라 합의결렬

증빙자료	※ 증빙자료 명칭(예 : 1.계약서, 2.관련자료, 3.사진·녹음 등)을 기재하고, 내용을 별도로 첨부
<p>분쟁조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피신청인에게 분쟁신청서 등의 사본제공에 동의합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미동의 시 통신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p> <p>「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또는 대리인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통신분쟁조정위원회 귀중</p>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통신분쟁조정 관련 법령(주요내용 요약)

-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33조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쟁
 2. 이용약관(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한 분쟁
 3.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이용,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4. 전기통신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분쟁
 5.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업무에 관한 분쟁
-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5(분쟁조정 절차)** ① 전기통신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⑦ 분쟁조정위원회는 제6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⑧ 그 밖에 분쟁조정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0조의6(분쟁조정 신청)** ① 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3. 신청의 취지 및 이유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분쟁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3.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
-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를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